보도시점

2024. 1. 29.(월)

배포 2024. 1. 29.(월) 18:40

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

- 「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」최종 결과 발표
-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, 피해보상 판단기준 등 검토 및 제안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'23.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「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」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.

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⁴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, ⁴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, ⁴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.

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**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**할 것을 제안했다.

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**피해보상**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,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.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,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.





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*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점, *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, *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.

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, 보상대상, 보상범위,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,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(https://www.prism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"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형민	(043-719-83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호	(043-913-2311)



